

2024년도 제1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 일 시 : 2024. 12. 24.(화) 10:00~11:40
-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5명, 불참 5명
 - 참석위원(15명)
 - 박종태(위원장), 유우식(부위원장), 권정호, 임정훈, 이준한, 김준석, 전경구, 김동배, 송현호, 장규환, 박지훈, 최병조, 박용호, 박문주, 한민섭
 - 불참위원(5명)
 - 노영돈, 이건설, 김준호, 이승호, 이남식

II 회의결과

- ☐ 제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융합자유전공대학장]

1. 제안사유

- 가.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융합전공의 담당 업무가 지원조직인 교육혁신원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융합자유전공대학 융합학부로 이관
- 나. 융복합 교육과정은 지원부서에서 학부로 재정립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립 필요

2. 주요내용

- 가.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융합전공 설치, 교육과정 설계, 운영은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에 명시된 창의융합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되므로 위원회 추가

- 나. 학생설계융합전공 행정 및 학생 접근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전공교수와 학생 담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생설계융합전공심사위원회를 심의 후 학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서 해당 전공교수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 후 융합학부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 다. 학생설계융합전공은 융합학부에 소속된 승인임에 따라 학생 소속 학장에서 융합학부에 설치된 창의융합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

제15조(창의융합교육위원회) ① 창의융합교육위원회는 융합학부에서 운영하는 융복합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창의융합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융합학부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창의융합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창의융합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 설계, 설치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발, 설치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복합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천대학교 연계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과정설치 심의) <개정 2023.10.11.> ① 창의융합교육위원회는 연계전공의 설치를 위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한다. <개정 2023.10.11.>

② 연계전공의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3.10.11.>

1.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여학위의 적절성 등 <개정 2023.10.11.>
2. 참여 학과(부) 구성의 적절성
3. 연계전공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개정 2023.10.11.>
4. 연계전공 설치에 대한 학과(부) 내 협의 여부 <개정 2023.10.11.>
5. 학생 수요 조사 <개정 2023.10.11.>
6. 진로·취업 분야 및 인력 수요 전망 <개정 2023.10.11.>

③ 연계전공의 설치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개정 2023.10.11.>

제5조(교육과정 편성 심의) <개정 2023.10.11.> ①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창의융합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개정 2023.10.11.>

1. 주관학과(부), 전공 및 연계학과(부), 전공은 교육과정에 연계전공 전공기초, 전공 핵심 및 전공심화로 편성된 과목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 각 전공은 학과 연계 교과목 외에 최소 9학점 이상 전공의 목적에 맞춘 연계전공 융합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3.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연계전공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기존 연계전공의 교과과정 개편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6] 연계전공 교과과정 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공위원회의 [별지 5] 심사결과를 창의융합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 인천대학교 학생설계융합전공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 개시 전 신청 기간에 [별지1] 학생설계융합전공 신청서를 담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 ② 소속 학과(부)장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에 대하여 전공의 타당성, 교과과정 등을 심사·보완 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별지4] 학생설계융합전공 심사결과를 첨부 자료와 함께 창의융합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창의융합교육센터에 설치된 창의융합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4.12.02.(월)
- 교무회의 보고 : 2024.12.03.(화)
- 총장 방침 : 2024.12. 초
- 의견 수렴 : 2024.12. 중
- 사전 심사 : 2024.12. 중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4. 12. 24.
- 평의원회 심의 : 2025.01. 예정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2호 심의안건 : ‘미래교육디자인’ 연계전공 신규 설치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융합자유전공대학장]

1. 제안사유

- 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과 학급경영을 디자인하고 타교과와 융합 수업을 디자인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
- 나. 예비교사들에게 주전공 교과와 타교과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미래교육 디자인 역량 함양 목적으로 연계전공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온라인 수업, AI 교육, 창의 교육 (학교) 디자인 및 평가, 비판적 사고 역량은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임
- 현재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 대처가 어려움
- 사범대학 내 전공 간 기계적인 융합이 아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역량 함양’이라는 공통된 지향점 마련
- 미래교육 역량을 지닌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나. 추진경과

일정	내용
2024. 4.	연계전공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24학년도 연계전공 신규 교육과정 연구 공모
2024. 6.	연계전공 신규 교육과정 연구 1건 선정
2024. 6. ~ 2024. 9.	연계전공 신규 교육과정 연구 진행
2024. 10. 25.(금)	창의융합교육위원회 심의 완료
2024. 11. 18.(월)	본부회의 보고 완료
2024. 11. 19.(월)	교무회의 보고 완료 후 학위명 재지정 필요 의견에 의해 차기 교무회의 안건 재상정
2024. 11. 28.(목)	창의융합교육위원회 재심의 완료
2024. 12. 3.(화)	교무회의 안건 재상정 완료
2024. 12. 5.(목)	연계전공 신규 설치(안) 보고 완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1. 제안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장애학생 및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변경 (안 제9조제2항) / 10인 이내 → 5인 이상 15인 이내
- 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및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안 제9조제3항)
- 다. 2015년 규정 제정 시 제9조제3항이 중복되어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4. 11. 04.(월)

○ 교무회의 보고 : 2024. 11. 05.(화)

- 총장 방침 : 2024. 11. 11.(월)
- 의견 수렴 : 2024. 11. 13(수) ~ 11. 20(수)
- 사전 심사 : 2024. 11. 25(월)
- 교육연구위원회 : 2024. 12. 24(화)
- 평의원회 : 2025. 1. 23(목)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2025학년도 개설 추진 중인 계약학과 신규 과정 운영 근거를 수립하고,
- 나.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학기와 맞도록 박사과정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최소 기간을 설정하며,
- 다. 2024학년도 제1차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휴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계약학과 과정 추가

- [별표 1] 계약학과 명칭·학생정원·학위명 추가

대학 / 대학원	학과명	입학정원	수여 학위
글로벌정경대학	글로벌무역물류학과	15명(신입학)	물류학사
경영대학	테크노경영학과	20명(편입학)	경영학사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20명(편입학)	공학사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10명	경제학석사
	녹색환경융합학과	20명	환경융합학공학석사
		5명	공학박사

나. 규정 제18조(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개정

- 현재 대학원 수업연한을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박사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을 동일하게 4학기로 개정
- 현행

제18조(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학사과정은 4년(편입은 2년 이상),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개정

제18조(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학사과정은 4년(편입은 2년 이상),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근거: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0조(수업연한)

제10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통합과정 4년, 연계과정은 1년 6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있는 특수목적사업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 규정 제24조(학칙적용 대상) 개정

- 근거: 2024학년도 제1차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제언사항
 - (운영위원회 위원) 휴학 필요 여부는 해당 학과 및 책임교수가 충분히 판단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등 과도한 행정절차로 승인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학생 및 행정업무의 불편함 초래
 - (검토 결과) 일반휴학 외 사유(군입대·출산·산업재해(질병))의 경우 일반 학부 재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칙 시행세칙 준용하여 휴학 승인.
 - (보론) 단,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관련 규정류에 따라 복학

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적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학과가 폐과 등의 사유로 운영 종료되었다면 잔여 교육은 모체학과에서 담당하되 학생의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함.

- 현행

제24조(학칙적용 대상)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계약학과 학생이 군 복무, 출산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수업 일수의 1/3 이상 수업 출석이 불가한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제정에 의해 총장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개정

제24조(학칙적용 대상)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계약학과 학생이 군 복무, 출산 및 **산업재해로 인해** 수업 일수의 1/3 이상 수업 출석이 불가한 경우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중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에 관한 휴학기간, 휴학절차, 군입대 휴학의 취소, 복학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인천대학교 학칙」 제5조,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4. 11. 18.(월)

○ 교무회의 보고 : 2024. 11. 19.(화)

○ 총장 방침 : 2024. 11. 20.(수)

○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서면심의) : 2024. 11. 20.(수) ~ 22.(금)

○ 의견수렴 : 2024. 11. 26.(화) ~ 12. 2.(월)

○ 사전심사 : 2024. 12. 9.(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4. 12. 24.(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1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 2025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개편안

○ 안전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에 의거 학과별로 작성한 2025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개편안 및 「인천대학교 연계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편 사항에 대하여 「인천대학교 교육연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편방향

- 대학 발전계획과 학과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한 대학의 비전 및 교육목표 실현
- 창의혁신에 도전하는 소통형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연계 교육의 강화
- 학습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연한 전공교육과정 체계 구축
- 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공능력 강화를 위한 전공 교육체계 구축

나. 개편방안

- 전공 교육과정 개정 주기(수시) : 년 1회 *정기개편 4년
-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및 학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
- 대학운영성과평가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보고서,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학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
- 학과별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전공 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전공학점제」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고려하여 1학년 1학기 전공기초·핵심 교과목 편성 지양

3.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및 근거

- 학칙 제52조(교과분류) 및 제55조(이수단위)

○ 학칙시행세칙 제25조(교과과정편성)

○ 인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나. 학과(부)·전공별 전공 교육과정 개정신청 자료: 별첨 (종이문서)

○ 학과 및 연계전공별 심의자료

- 개정신청서 각 1부
- 심의의결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각 1부
- 전공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보고서 각 1부
- 교육과정 개정내역(개편 전·후 교육과정표) 각 1부
- 신설 교과목 설명서 및 명칭변경 교과목 설명서 각 1부
- 미래교육자문위원회 회의결과 각 1부

○ 일반선택 과목 심의자료

- 관련문서 및 신설 교과목 설명서 각 1부

다.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2024. 12. 2.(월)

○ 학사위원회 심의: 2024. 12. 5.(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4. 12. 24.(화)

○ 2025-1학기 수업 개설계획 수립 : 2024. 12월중

○ 2025-1학기 수업 개설 및 강의시간표 편성 : 2025. 1월 ~ 2025. 2월초

○ 교과목 수정 기간 운영 : 2025. 1월중

- 동일·대체과목 지정 변경 및 신설과목에 대한 신규 신청 등
- 교과목 개요 및 영문명칭 등 변경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6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우리 대학에는 현재 9개의 부설연구소와 60여 개의 기타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평가 및 지원받고 있으나,

나. 「인천대학교 학칙」 제18조에는 “부설연구소”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연구

소”의 설치 근거가 없어 「학칙」 제 18조의 “부설연구소”를 “부설연구소 및 기타연구소”로 변경하여 기타연구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장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제4장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및 기타연구소**”로 변경
- 나. “제18조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제18조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및 기타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 중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및 기타연구소**”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마.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구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2. 24
 - 평의원회 안건 상정 : 2025. 1월 중
 - 이사회 안건 상정 : 2025. 2월 중
-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7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 가. 연구소 내에 부설연구소와 기타연구소의 구분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연구소 설치 시 설치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연구위원회 상정하고자 함.
- 라. 대학 주도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 램프 (LAMP)사업 수주에 도전하고자 연구소의 통합 및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구소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설연구소와 기타연구소의 구분 및 근거 마련(안 제2조)
 - 9개 부설연구소 외의 60여 개 기타연구소에 관한 근거를 규정 함.
- 나. 연구소 설치 절차(안 제4조)
 - 연구소 설치 시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구성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 함.
- 다. 연구소장 임명 및 임기(안 제6조)
 - 연구소장 임명사항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라. 연구소 소속인력(안 제8조)
 -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근거를 규정 함.
- 마. 연구소 점검 및 평가(안 제10조)
 - 연구소 점검 및 평가와 평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바. 연구소의 통합절차(안 제12조)
 -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사. 연구소의 폐지절차(안 제13조)
 - 연구소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함.
- 아. 연구소의 정보관리(안 제14조)
 - 연구소 실적 및 성과 등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학칙」 제18조(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구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2. 24
- 평의원회 안건 상정 : 2025. 1월 중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8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연구소 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연구소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모두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1조(목적) 관련 근거 조항 변경

나. 제 6조(수당) 내용 중 “외부전문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개정(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구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2. 24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9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연구구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대학 주도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연구소의 설치·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연구구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기능) 제6호에 연구시설 관련 심의사항 추가

- “연구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소 설치·평가·통합·폐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구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전 상정 : 2024. 12. 24
- 평의원회 안전 상정 : 2025. 1월 중
-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10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연구원 운영규정 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의 자격, 임명(위촉),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안 제4조)

- 본교 각 연구소의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서로 다른 연구원들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전임연구원의 위계와 자격을 규정 함.

나. 연구원의 임용(위촉)권자 등(안 제5조)

- 연구원 구분별 임용(위촉)권자와 임용(위촉)기간을 규정 함.

다. 연구원의 해임·해촉(안 제7조)

- 임용 기간 중 해임·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라. 연구원의 임무 및 권리(안 제8조)

- 연구원의 임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인천대학교 연수연구원 운영 규정
-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후 전문연구원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연구원규정 제정 후 「인천대학교 연수연구원 운영 규정」
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후 전문연구원 규정」 폐지

마.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조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2. 24
- 평의원회 안건 상정 : 2025. 1월 중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1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폐지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존치 필요성이 없어 연수연구원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 제정규정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인천대학교 연구원규정」 제정과 동시에 폐지

마.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구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2. 24
 - 평의원회 안건 상정 : 2025. 1월 중
-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12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후 전문연구원 규정 폐지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존치 필요성이 없어 대학원 박사후 전문연구원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후 전문연구원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 제정규정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인천대학교 연구원규정」 제정과 동시에 폐지

마. 추진일정

- 총장방침 : 2024. 11. 05
- 본부회의 : 2024. 11. 25
- 연구구성위원회 : 2024. 12. 03
- 의견수렴 : 2024. 12. 4 ~ 12. 10
- 교무회의 : 2024. 12. 17
- 사전심사 : 2024. 12. 19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2. 24

- 평의원회 안건 상정 : 2025. 1월 중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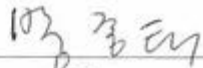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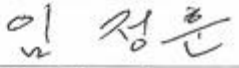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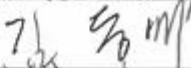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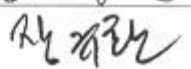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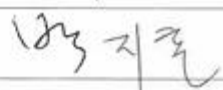
2024년도 제1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12-1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12-2	‘미래교육디자인’ 연계전공 신규 설치안	원 안 가 결
	12-3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2-4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2-5	2025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개편안	원 안 가 결
	12-6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원 안 가 결
	12-7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수 정 가 결
	12-8	인천대학교 연구소 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12-9	인천대학교 연구구성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12-10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 제정규정안	수 정 가 결
	12-11	인천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폐지규정안	원 안 가 결
	12-12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후 전문연구원 규정 폐지규정안	원 안 가 결

2024년 제12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4. 12. 24.(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1	위원장	총장	박종태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유우식	
3	위원	대외협력부총장	노영돈	
4	위원	대학원장	권정호	
5	위원	인문대학장	이건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준호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임정훈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이준한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석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전경구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동배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송현호	
13	위원	사범대학장	장규환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박지훈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직무대리	이승호	
16	위원	교무처장	최병조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박용호	
18	위원	기획예산처장	박문주	
19	위원	연구처장	한민섭	
20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